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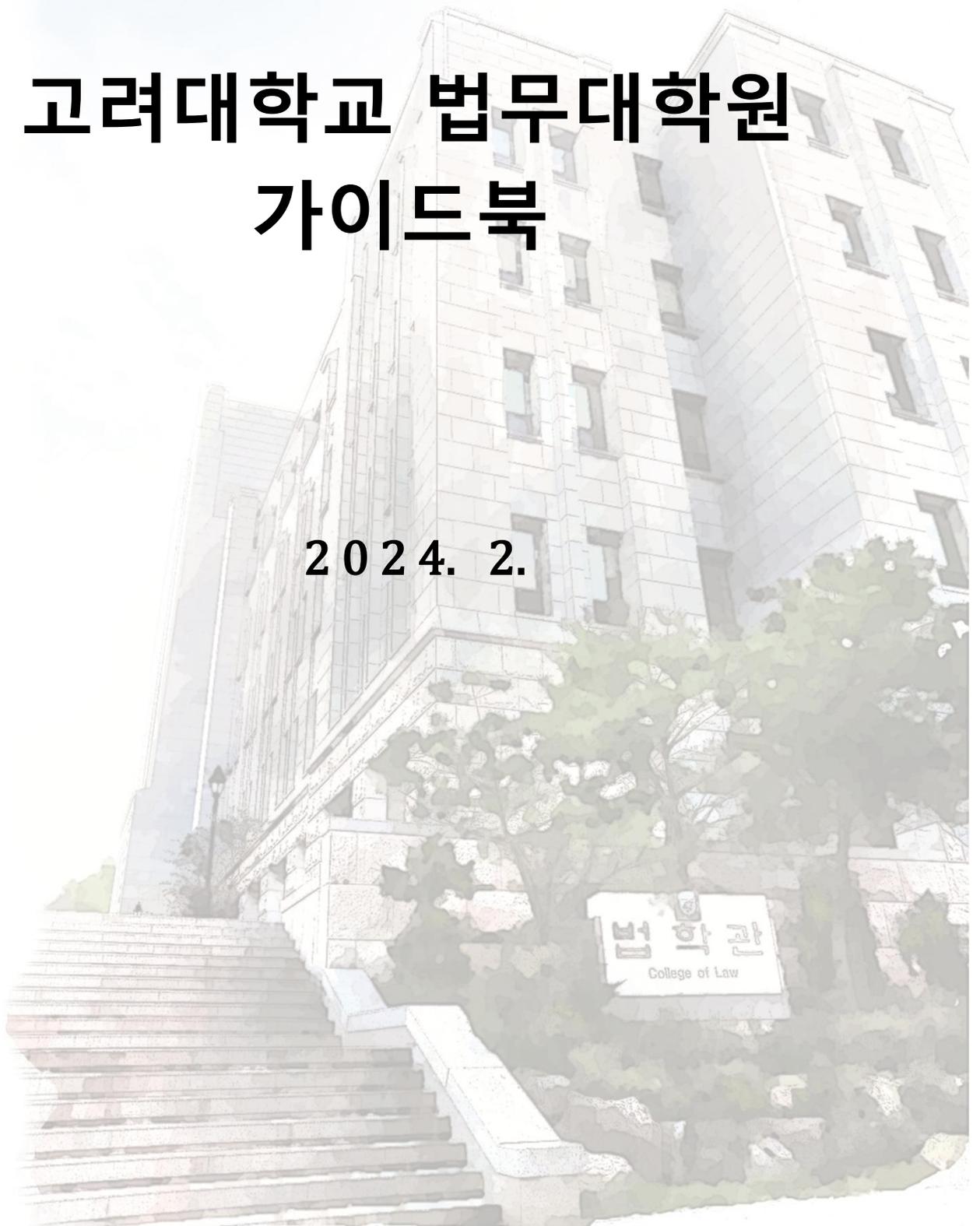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高大法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가이드북

2024. 2.



高大法學

2024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학사안내



목 차

I. 조직 및 구성원

II. 학사안내

1. 학사일정
2.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
3. 수강신청
4. 휴학 / 복학
5. 학생증 발급
6.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III. 교과과정

1. 법무대학원 전공분야
2. 졸업학점
3. 연구지도학점
4. 종합시험
5. 논문심사

I. 조직 및 구성원

1. 법무대학원 주요 보직교원

보직	교수명	구내번호	Email
원장	이황	1260	hwang_lee@korea.ac.kr
부원장	김경욱	2880	kimkw@korea.ac.kr

2. 전공별 주임교수

학과	교수명	구내번호	Email
금융법학과	박세민	1909	seminpark@korea.ac.kr
의료법학과	김명숙	2883	ihun@korea.ac.kr
지적재산권법학과	안효질	1871	iplaw@korea.ac.kr
경찰법학과	김연태	1894	ytkim@korea.ac.kr
공정거래법학과	이황	2879	hwang_lee@korea.ac.kr
민사절차법학과	김경욱	2880	kimkw@korea.ac.kr
조세법학과	신호영	2886	hoyoungshin@korea.ac.kr
국제법무학과	강병근	1908	kangpk@korea.ac.kr

※ 교내 전화 연결 방법 : ☎ 02-3290-구내 전화번호

II. 학사안내

1. 학사일정

년	월	일	요일	일정	대상
2024	1	29~31	월~수	재입학원서접수	
	2	1~26	목~월	휴·복학 신청	
		9~12	금~월	설날(공휴일)	
		14~16	수~금	1학기 수강신청(재입학생 포함)	
		20~27	화~화	1학기 등록	
		23	금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8	수	2024학년도 전기 입학식	
	3	1	금	삼일절(공휴일)	
		4	월	1학기 개강	
		4~8	월~금	전기 종합시험 신청	3학기생 이후
		4~14	월~목	지도교수 신청(2학기 진입생)	2학기생
		11~22	월~금	재학생 학위청구 트랙신청(논문트랙, 교과트랙)	4학기생
		18~20	월~수	1학기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4	6	토	전기 종합시험 시행	
		19	금	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15~24	월~수	2024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원서 접수	
		22~26	월~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5학기생
		22~26	월~금	1학기 중간고사	
	5	5	일	개교기념일, 어린이날(공휴일)	
		6	월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	수	부처님오신날(공휴일)	
		18	토	2024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	
	6	6	목	현충일(공휴일)	
		12	수	2024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	
		17~21	월~금	1학기 기말고사	
	7	6.26~7.5	수~금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도서관 홈페이지)예정	
	8	1~26	목~월	휴·복학 신청	
		5~9	월~금	재입학원서접수	
		14~16	수~금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재입학생 포함)	

		15	화	광복절(공휴일)			
		22~29	목~목	2학기 등록			
		23	금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예정)			
	9		2	월	2학기 개강		
			2~6	월~금	후기 종합시험 신청	3학기생 이후	
			2~6	월~금	지도교수 신청(2학기 진입생)	2학기생	
			9~13	월~금	재학생 학위청구 트랙신청(논문트랙, 교과트랙)	4학기생	
			16~18	월~수	추석(공휴일)		
			19~20	목~금	수강신청 정정 및 확인		
			27~28	금~토	정기 고·연전(예정)		
	10		3	목	개천절(공휴일)		
			5	토	후기 종합시험 시행		
			9	수	한글날(공휴일)		
			18	금	후기 종합시험 합격자 발표		
			21~25	월~금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5학기생	
			21~25	월~금	2학기 중간고사		
			28~11.6	월~수	2025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원서 접수		
	12		7	토	2025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		
			16~20	월~금	2학기 기말고사		
			18~1.2	수~목	학위청구논문 원문 업로드(도서관 홈페이지)예정		
			20	금	2025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발표		
			25	월	성탄절(공휴일)		
	2025	1	1	월	신정(공휴일)		
			13~24	월~금	재입학원서접수		
			28~30	화~목	설날(공휴일)		
		2		3~25	월~화	휴·복학 신청	
				12~14	수~금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예정)	
				20~27	목~목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	
25				화	학위수여식(예정)		
28				금	2025학년도 입학식(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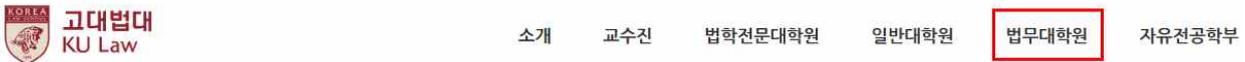
2.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 (<http://portal.korea.ac.kr>)

■ 포탈시스템(KUPID) 개인 계정 받기

- ▶ <http://portal.korea.ac.kr> 접속 후 [싱글 ID 만들기] 클릭
(신입생 계정생성은 2024년 3월 4일부터 가능)
- ▶ 수강신청 / 성적조회 / 학적변동 / 등록 및 장학금 수혜내역 / 인터넷제증명발급 등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korea.ac.kr>)

■ 홈페이지 > 입학안내 > 법무대학원 > 공지사항



법무대학원

대학원 소개

교육과정

입학안내 >

- 입학안내
- **공지사항**
- 특례제입학

학생 생활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법무대학원

제목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전체 선택/비선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input type="checkbox"/> 98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신	행정실	4
<input type="checkbox"/> 97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 학생증 예약등록/신청/배부 안내 공	행정실	4
<input type="checkbox"/> 96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등록안내	행정실	331

- ▶ 신입생의 경우 현재 포탈 아이디 미생성으로 인해 법무대학원 게시판에 접속이 불가

- ▶ 입학안내 게시판의 경우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포탈 아이디가 생성되는 2024.3.4. 이전 까지 신입생에 대한 모든 공지사항은 입학안내 > 공지사항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 포탈 아이디가 생성되는 2024.3.4. 이후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 내 법무대학원 배너를 클릭한 이후 접속되는 학사공지에 게시할 예정
- ▶ 포탈 아이디로 로그인 해야 접속할 수 있는 메뉴로 **2024.3.4. 이후 접속 가능** [ID/비밀번호는 포탈 ID/비밀번호와 동일]
- ▶ 모든 학사일정이 해당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므로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글을 확인

3.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 1) 수강신청 : 2024년 2월 14일(수) 13:00 ~ 2월 16일(금) 12:00
- 2) 수강신청 정정 : 2024년 3월 18일(월) 10:00 ~ 3월 20일(수) 17:00

※ 2024-1학기 개강 : 2024년 3월 4일(월)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기간은 법무대학원 전체의 학사일정과의 조율을 통해 정해진 일정이므로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기한 엄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이 불가하오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신청 방법 (졸업이수 관련은 8페이지 참고)

- 1) 수강신청 전용URL(<http://sugang.korea.ac.kr/graduate>)에 접속

★법무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에 해당하지 않음★

- 2) 로그인 : **학번조회는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공지사항 참조**
암호는 [포털미사용자 비밀번호변경]에서 설정한 비밀번호 (설정전: 주민번호뒷자리)
암호분실시 [포털미사용자 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3) 개설과목 및 강의시간표, 강의계획(안) 열람

▶ 수강신청 내 교과목 편람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시간)
GLF512	00	전공선택	형사소송법 두번째 목요일 (3/11, 3/25, 4/8, 4/22, 5/6, 5/20, 6/3, 6/17)	류봉근	2.0(2.0)
GLF519	00	전공선택	경찰관직무집행법 첫번째 목요일 (3/4, 3/18, 4/1, 4/15, 4/29, 5/13, 5/27, 6/10)	김홍주	2.0(2.0)

- 4) 왼쪽 탭에서 수강신청 클릭 후 개설과목 검색하여 신청 클릭 > 대학원: 법무대학원 학과:
 수강하려는 학과 선택 > [신청] 클릭 > 수강신청 내역에 해당 과목이 나오는지 확인

수강신청	캠퍼스	개설대학원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시간)	강의시간/강의실	신청/정원
신청	서울	법무대학원	GLB511	00	전공선택	의료책임법	신현호	2.0(2.0)	화(9-11) 법학관신관 208호	0 / -
신청	서울	법무대학원	GLB520	00	전공선택	생장의료법학	허재훈	2.0(2.0)	화(9-11) 법학관신관 208호	0 / -

수강신청 내역 [신청확정: 2학점]								시간표 인쇄
학수번호	분반	이수구분	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 (시간)	강의시간/강의실	재수강	상세
GLB511	00	전공선택	의료책임법	신현호	2(2)	화(9-11) 법학관신관 208호		상세

※ 수업은 각 과목별 개강일로부터 격주강의로 진행(수강신청 시 수업일 확인 필수)

- ▶ 수업시간 : 19:00 ~ 22:30 [9-12교시]
- ▶ 강의시작 시간은 담당교수님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같은 요일 수강신청 시 나타나는 경고메시지는 격주 수업이므로 무시하고 진행하면 되지만, 수업일이 다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법무대학원 > 공지사항에 “2024학년도 1학기 법무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안내” 게시글 참고**

다.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1)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전산 입력하여야 함
- 2) 수강신청 후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UID) > 학적/수업 > 수강신청내역조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정정
- 3)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이수구분(전공선택) 및 학수번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 4)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및 정정 또는 과목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 5) 어떠한 경우라도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을 중복 수강하는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함
- 6) **본인 전공 학과 '전공선택' 과목의 초과 이수학점 과목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 7) 2차 학기 등록생부터 연구지도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2차 학기 초에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해야함(연구지도는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지도교수신청 후 자동 생성 됨)
- 8) 재수강 제도가 없어 같은 과목을 다시 이수한 경우 나중에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F학점의 경우는 중복수강 가능)
- 9) 학부 또는 타 대학원 과목은 이수하더라도 법무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법무대학원 내 타전공 과목은 이수학점으로 인정됨)

4. 휴학 / 복학

가. 신청 시기 : 매년 (전기) 2월 초 ~ 2월 말, (후기) 8월 초 ~ 8월 말 정해진 학적변동기간 내

나. 신청 방법 : [고려대학교 포탈시스템(KUPU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휴·복학신청(대학원)]

다. 휴/복학 종류

- 1) 일반휴학
 - ▶ 최대 5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 연구과정생은 총 4학기 휴학 가능
 -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신청 하여야 함
 - ▶ 휴학기간이 만료되고도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 2)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은 휴학기간 및 학위취득연한에서 제외됨
- 3)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신청 하여야 함
- 4) 출산 및 육아휴학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출산 및 육아휴학(자녀 8세 이하)은 휴학기간 및 학위취득연한(7년)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특별휴학 처리함)

5. 학생증 발급

가. 신청기간 및 방법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입학안내 > 법무대학원 > 공지사항에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학생증 예약등록 / 신청 / 배부안내” 게시글 참고

나. 학생증(비금융) 배부일정 및 장소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포탈시스템(KUPID) 참고

- 1) 일정: 2024. 3. 4(월) 10:00 ~ (개강 이후 수령 가능)
- 2) 장소: 법무대학원 행정팀 (수령시 신분증 지참)

One-stop 서비스센터

- ▶ 인문사회계 : 중앙광장 지하 1층 (02-3290-1142, 1144)
- ▶ 자연계 : 하나스퀘어 지하 1층 (02-3290-4090, 4092)
- ▶ 세종캠퍼스 : 학술정보원 1층 (044-860-1088, 1089)

6. 학자금대출

- 1)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공지사항 참조
- 2) 국가장학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기간이 본 대학원의 등록기간과 상이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비로 등록한 후에 대출 기간에 대출을 받아야 함.
(사전에 자비로 등록 후 대출 신청)
※ 신입생에 한하여 가능. 가능 여부 판단 및 정확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1599-2000)
※ 국가장학기금 학자금대출 인터넷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III. 교과과정

1. 법무대학원 전공분야

- 금융법학과
- 의료법학과
- 지적재산권법학과
- 경찰법학과
- 공정거래법학과
- 민사절차법학과
- 조세법학과
- 국제법무학과

2. 수료학점

구분	석사과정 논문트랙	석사과정 교과트랙	연구과정	비고
전공선택	12	16	6	
일반선택	12	14	6	
연구지도	4	2(4)	해당없음	- 2학기부터 매학기 1학점씩 수강 - 교과트랙은 2학점만 졸업학점 인정
계	28	32	12	

- ▶ 교과학점은 매학기 12학점 까지 취득 가능함
- ▶ 교과학점은 한 과목당 2학점임
- ▶ 자신이 입학한 학과의 과목 이수시 “전공선택”, 그 외 학과의 과목 이수시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 논문트랙이란, 논문 통과를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교과트랙이란, 논문 통과 없이 수업 이수만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 ▶ 예를 들어, 교과트랙으로 진입하였을 경우, 전공과목 8개, 타 전공과목 혹은 전공 초과과목 7개, 연구지도 4개(2, 3, 4, 5학기 수강) 수업을 이수하였을 때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됨

3. 연구지도학점

수료에 필요한 필수학점으로 2학기부터 5학기까지 매 학기 1학점씩 4학기 동안 총 4학점을 취득해야 함
(‘연구지도학점’은 전공학점과는 별도로 취득해야 함)

- ▶ 연구지도 : 재학생 석사 2~5학기, 매 학기 1학점씩 이수
- ▶ 지도교수신청서 : 입학 후 두번째 학기 초에 법무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방법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양식] 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지도교수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날인 → 법무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

4. 종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교과트랙 포함))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의 제3차 학기부터 응시할 수 있음

과 정	응시자격		필기시험	구술시험	시행시기
	학점이수	평점평균			
석 사	1. 2학기 이상 이수 2. 12학점 이상 취득 3. 평점평균 3.0 이상		각 전공별 주임교수가 선정하는 전공선택(총 2과목)	논문게재증명서 및 논문(전문) 사본 제출	전기 : 3월~4월 후기 : 9월~10월 ※ 매학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각 과목당 60분 100점 / 70점 이상	지도교수 평가진행 결과제출	

5. 논문심사

과정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시행시기
	제출연한	학점이수	평점평균	자격시험	
석사	7년 ※ 본인의 입학년도 로부터 산입	28	3.0 이상	종합시험	전기 : 4월 말 후기 : 10월 말 ※매학기 대학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 1)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2) 본 대학원 석사학위 교과과정 이수계획에 따라 5학기 이상 등록,
2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3) 학위청구논문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 지도교수 배정을 받아 논문 제출 승인을 받은 자

【 인권과 성평등 교육 】

- ▶ 교육성격 : 재학 중 1회 이상 수료할 시 졸업요건 충족
- ▶ 수강방법 : 입학 후 항시 블랙보드(<http://kulms.korea.ac.kr>)로 수강 가능 (2024.3.1. 이후)
(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하나,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이수 권고)
- [법무대학원 홈페이지](#) > [법무대학원 배너 클릭](#) > [공지사항](#) > [학사공지 사항에 “★2024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수 안내” 게시글](#) 참고

高大法學

2024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요람



2024. 2.

목 차

I. 법무대학원 연혁

II. 교과과정 일람표

III. 전공별 교수요목

IV. 법무대학원 규정

1. 대학원 학칙

2. 대학원학칙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 고려대학교 모든 규정은 포탈 > [빠른서비스] 규정/학칙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I. 법무대학원 연혁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연혁	
1995년 12월	- 교육부인가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 초대 김형배 원장 취임 - 5개학과 모집 (신용거래법학과, 의료법학과, 지적재산권법학과, 지방자치법학과, 국제경제법학과)
1997년 1학기	최고위과정 모집 (최고위법 - 의료법 전공)
1997년 12월	2대 이기수 원장 취임
1998년 1학기	최고위과정 모집 (최고위법 - 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은 99년 2학기까지 모집함
1998년 1학기	2개 학과 신설(경찰법학과, 국제거래법학과)
1998년 7월	3대 김일수 원장 취임
2000년 1학기	명칭변경(법무대학원)
2000년 6월	4대 유병화 원장 취임
2000년 6월	5대 정동윤 원장 취임
2001년 2월	법학관 신관 이전(신축)
2002년 6월	6대 배종대 원장 취임
2004년 1학기	2개 학과 신설(공정거래법학과, 민사절차법학과)
2004년 6월	7대 채이식 원장 취임
2005년 3월	학과명칭 변경 (신용거래법학과 → 금융거래법학과)
2006년 7월	8대 하경호 원장 취임
2006년 9월	학과명칭 변경 (금융거래법학과 → 금융법학과)
2007년 9월	1개 학과 신설(조세법학과)
2008년 7월	9대 채이식 원장 취임
2010년 11월	10대 하경호 원장 취임
2011년 9월	11대 박노형 원장 취임
2013년 7월	12대 신영호 원장 취임
2015년 7월	13대 김규완 원장 취임
2015년 2학기	1개 학과 폐지 (지방자치법학과)
2015년 2학기	1개 학과 신설 (국제법무학과) 국제거래법학과와 국제경제법학과 통합
2017년 7월	14대 명순구 원장 취임
2019년 7월	15대 안효질 원장 취임
2021년 7월	16대 정승환 원장 취임
2023년 7월	17대 이황 원장 취임

II. 교과과정 일람표

I. 졸업학점 이수내용

과 정	석사과정 논문트랙(학점)	석사과정 교과트랙(학점)	연구과정 (학점)	비 고
전공선택	12	16	6	
일반선택	12	14	6	
연구지도	4	4(2)	해당없음	-2학기부터 수강 -교과트랙 2학점만 졸업학점인정
계	28	32	12	

II. 교과목 일람표

가. 공통교과목

학수번호	교 과 목	학점	비 고
GLO 501 GLO 511 GLO 512	협상론 공법일반이론 사법일반이론	2 2 2	전공인정
소 계		6	
GLO 502 ~ 505	연구지도 I ~ IV	1(4)	2학기부터 매학기 수강

나. 전공별 과목

1. 금융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K 511	금융거래법일반이론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K 513	은행법		
	GLK 514	보험업법		
	GLK 515	증권거래법		
	GLK 516	신탁법		
	GLK 517	자산유동화법		
	GLK 5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		
	GLK 519	금융지주회사법		
	GLK 521	기업구조조정법		
	GLK 522	신용정보.신용평가법		
	GLK 523	감리제도와 금융업회계		
	GLK 5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		
	GLK 525	금융과도산법		
	GLK 526	어음.수표법		
	GLK 527	전자금융거래연구		
	GLK 528	금융범죄론		
	GLK 529	파생금융상품법		
	GLK 530	금융거래약관법		
	GLK 531	담보물권론		
	GLK 532	채권적담보권론		
	GLK 533	시사금융법		
	GLK 534	영문금융계약실무		
	GLK 536	자본시장법		
	GLK 537	금융거래판례연구		
	GLK 538	보험법판례연구		
	GLK 5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		
	GLK 540	채권의발행과운용		
	GLK 541	금융과조세		
	GLK 543	부동산금융과법		
	GLK 544	보험법쟁점연구		
GLK 545	자동차보험연구			
GLK 546	보험법특수문제연구			
GLK 547	보험법일반이론			
GLK 548	손해보험연구			
GLK 549	생명상해보험연구			
GLK 550	금융회사의지배구조론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K 551	신탁법특수연구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K 552	동산채권담보법		
	GLK 553	전자상거래법		
	GLK 554	금융형법특수연구		
	GLK 555	자산운용업법		
	GLK 592	금융제도법일반이론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2. 의료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B 511	의료책임법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B 512	의료형법		
	GLB 513	의료민사판례연구 I		
	GLB 514	의료민사판례연구 II		
	GLB 515	의료형사판례연구		
	GLB 516	의료민사소송법		
	GLB 517	의료형사소송법		
	GLB 518	의료보험법		
	GLB 519	의료분쟁조정제도론		
	GLB 520	생명의료법학		
	GLB 521	의료윤리		
	GLB 522	의료법학특수연구		
	GLB 523	의료법정책		
	GLB 524	비교의료법 연구		
	GLB 525	법의학		
	GLB 526	기초의학개론		
	GLB 527	임상학개론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3. 지적재산권법학과

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전공 선택	GLC 513	특허법·실용신안법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C 515	상표법		
	GLC 516	저작권법		
	GLC 518	지적재산권소송		
	GLC 522	지적재산권국제조약		
	GLC 526	신지적재산권		
	GLC 527	국제기술도입계약		
	GLC 530	상표법 판례연구		
	GLC 531	저작권 판례연구		
	GLC 53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GLC 535	상품화권		
	GLC 537	컴퓨터와 지적재산권		
	GLC 539	특허법·실용신안법판례연구		
	GLC 540	디자인보호법		
	GLC 541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		
	GLC 542	특허소송		
	GLC 543	지적재산권과법의충돌		
	GLC 544	디지털권리관리		
	GLC 545	지적재산권외이론적근거		
	GLC 546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및 인격권의보호		
	GLC 547	엔터테인먼트법		
	GLC 548	부정경쟁방지법 특수문제		
	GLC 549	미국특허법		
	GLC 550	미국저작권법		
	GLC 551	유럽특허법		
	GLC 552	유럽저작권법		
	GLC 554	동아시아국가의지적재산권법		
	GLC 555	지적재산권법기본판례		
	GLC 556	지적재산권과국제거래		
	GLC 557	저작권법심화세미나		
	GLC 558	영업비밀보호법		
	GLC 559	지적재산권라이선싱		
	GLC 560	지적재산권침해및구제		
GLC 561	부정경쟁행위론			
GLC 562	토착유산과지적재산권			
GLC 563	4차산업혁명과지적재산권			
GLC 564	인공지능과 IP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4. 경찰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F 511	경찰행정법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F 512	형사소송법		
	GLF 513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론		
	GLF 514	폭력범죄론		
	GLF 515	도로교통법		
	GLF 516	수사법규론		
	GLF 517	형사증거법		
	GLF 518	형법정보학		
	GLF 519	경찰관직무집행법		
	GLF 520	경찰행정작용연구		
	GLF 521	경찰조직법연구		
	GLF 522	경찰법특수문제연구		
	GLF 523	경찰법판례연구		
	GLF 524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GLF 525	비교경찰법론		
	GLF 526	환경범죄론		
	GLF 527	경찰정보관리론		
	GLF 528	경찰책임론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5. 공정거래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H 511	공정거래법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H 517	부정경쟁방지법		
	GLH 518	약관규제법		
	GLH 5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GLH 522	공정거래법판례·심결례연구		
	GLH 526	경제법특수문제연구		
	GLH 531	독과점규제론		
	GLH 532	불공정거래규제론		
	GLH 533	미국독점금지법		
	GLH 535	기업결합규제론		
	GLH 536	부당공동행위규제론		
	GLH 539	하도급거래법		
	GLH 540	프랜차이즈와공정거래		
	GLH 541	표시·광고와공정거래		
	GLH 542	지적재산권과공정거래		
	GLH 545	소비자보호법		
	GLH 546	비교경쟁법		
	GLH 547	방송통신법		
	GLH 548	회사및기업집단지배구조론		
	GLH 549	법경제학과경쟁법		
GLH 550	온라인플랫폼과공정거래			
GLH 551	공정거래형법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6. 민사절차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I 511	민사소송법일반이론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I 512	민사집행법일반이론		
	GLI 513	민사소송법구조론		
	GLI 514	소와재판론		
	GLI 515	민사증거법		
	GLI 516	다수당사자소송론		
	GLI 517	인터넷소송법		
	GLI 518	손해배상소송법		
	GLI 519	민사소송법판례연구		
	GLI 520	국제민사소송법		
	GLI 521	비교민사소송법		
	GLI 522	회사관계소송법		
	GLI 523	부동산집행법		
	GLI 524	보전소송법		
	GLI 525	민사집행법판례연구		
	GLI 526	보전소송법판례연구		
	GLI 527	도산법 I		
	GLI 528	도산법 II		
	GLI 529	도산법판례연구		
	GLI 530	중재법		
GLI 531	ADR론			
GLI 532	동산·채권집행법			
GLI 533	채권집행실무			
GLI 534	보존소송실무			
GLI 535	판결서주문의이해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7. 조세법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L 511	세법일반이론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L 512	조세판례연구		
	GLL 513	법인세법		
	GLL 514	소득세법		
	GLL 515	소비세법		
	GLL 516	상속증여세법		
	GLL 517	세무회계론		
	GLL 518	법률가와회계		
	GLL 519	조세특례론		
	GLL 520	조세절차법		
	GLL 521	세무조사론		
	GLL 522	조세쟁송법		
	GLL 523	조세제재법		
	GLL 524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		
	GLL 525	기업조세법		
	GLL 526	부동산세제론		
	GLL 527	원천세제론		
	GLL 528	유럽세법		
	GLL 529	미국세법		
	GLL 530	이전가격세제론		
	GLL 531	관세법		
	GLL 532	중국세법		
	GLL 533	지방세법		
	GLL 534	국제거래와조세		
	GLL 535	금융세제론		
	GLL 536	조세헌법론		
	GLL 537	조세헌법판례연구		
	GLL 542	조세회피방지론		
GLL 543	조세입법정책론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8. 국제법무학과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 고
전공 선택	GLM 511	국제거래법일반이론	2	논문트랙: 택 6(12학점) 교과트랙: 택 8(16학점)
	GLM 512	국제상품무역법		
	GLM 513	국제물품매매법		
	GLM 514	신용장법론		
	GLM 515	국제용역거래법론		
	GLM 516	국제상사중재법론		
	GLM 517	국제투자거래법론		
	GLM 518	국제조세법론		
	GLM 519	영미계약법		
	GLM 520	국제금융거래법론I		
	GLM 521	국제금융거래법론II		
	GLM 522	국제보험법론		
	GLM 523	전자상거래법론		
	GLM 524	국제물류법론		
	GLM 525	국제거래특수문제연구		
	GLM 526	국제거래판례연구		
	GLM 527	국제계약법일반이론		
	GLM 528	국제지식재산거래법론		
	GLM 529	국제운송법론I		
	GLM 530	국제운송법론II		
	GLM 531	국제사법론		
	GLM 532	다국적기업법론		
	GLM 533	영미회사법		
	GLM 534	국제법일반이론		
	GLM 535	국제서비스무역법		
	GLM 536	국제투자법		
	GLM 537	전자상거래와국제규범		
	GLM 538	국제경쟁법		
	GLM 539	무역구제법		
	GLM 540	국제무역과환경		
	GLM 541	자유무역협정		
	GLM 542	국제관세법과원산지규정		
	GLM 543	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		
GLM 544	WTO분쟁해결제도			
GLM 545	대한민국통상법연구			
GLM 546	미국통상법연구			
GLM 547	EU통상법연구			
GLM 548	국제통상협상			
GLM 549	국방계약론			
GLM 550	방위사업정책론			
GLM 551	국제안보법정책론			
소 계			12(16)	() 교과트랙
일반선택			12(14)	
합 계			28(32)	연구지도 2학점 포함

III. 전공별 교수요목

가. 학과별 전공선택 인정과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 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적용의 실재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 이론 및 실재를 강습한다.

나. 연구지도

GLO 502 ~ 505 연구지도 I ~ IV(Research I ~ IV)

다. 전공선택 교수요목

1. 금융법학과(Financial Law)

GLK 511 금융거래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Transactions)

수신거래, 여신거래, 금융거래 약관, 리스의 법률관계, 신용카드, 신용장의 법률관계 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GLK 513 은행법(Banking Law)

은행관련법은 금융업무의 기초를 이루는 여신 및 수신업무와 관련된 각종제도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법상 회사와는 특칙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은행 관련 업무의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GLK 514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Law)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관련업법의 일반 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GLK 515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의 연구와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신용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 검토한다.

GLK 516 신탁법(Trusts Law)

신탁제도의 거래상 기능과 법리, 그리고 신탁법을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상의 각종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GLK 517 자산유동화법(Asset-backed Securitization Law)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채권을 모아 (pooling)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이른 자산유동화제도를 연구하고 민법 특히 채권 편에 대한 특칙을 검토함으로써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한다.

GLK 5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Law)

국제금융거래의 특색,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해외 사채발행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등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19 금융지주회사법(Law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 및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근거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GLK 521 기업구조조정법(Corporate Restructuring Law)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으로 기업구조조정(M&A 포함)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연구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특별한 제도 예를 들면 계약 이전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검토한다.

GLK 522 신용정보·신용평가법(Law on Credit Information and Credit Assessment)

금융거래 등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 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신용정보)와 일정 기간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행태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신용평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23 감리제도와 금융업회계(Supervision System and Accounts of Financial Business)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은행업 회계, 증권·투신업 회계, 보험업 회계 등 금융업회계와 금융관련 세법을 유기적으로 연구함

GLK 5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Case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증권거래의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GLK 525 금융과도산법(Finance and Bankruptcy Law)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도산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함.

GLK 526 어음·수표법(Law on Drafts, Notes and Checks)

어음과 수표거래에 관한 制度 및 法 理論, 그리고 신용거래상 특수한 법적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27 전자금융거래연구(Stud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전자금융거래는 처리속도, 비대면 거래, 개방통신망의 활용,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존재 등의 특성에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 GLK 528 **금융범죄론(Law on Banking Crimes)**
증권관련범죄, 보험관련범죄, 신용카드범죄 등 금융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범죄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함
- GLK 529 **파생금융상품법(Financial Derivatives Law)**
선물(future)·옵션(option)·스왑(swap)·선도(forward)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 GLK 530 **금융거래약관법(Law on Standard Terms in Financial Transactions)**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현상을 이해하며, 이에 관한 법적문제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연구한다.
- CLK 531 **담보물권론(Theory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 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 GLK 532 **채권적담보권론(Theory of Contractual Security)**
채권법적 제도가 신용거래에서 작용하는 담보적 기능을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 GLK 533 **시사금융법(Current Topics on Finance Law)**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법 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 GLK 534 **영문금융계약실무(Legal Writing and Banking Documentation in English)**
국제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작성되는 주요 영문 계약서와 문서에 대하여 실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금융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표현, 영어문서의 작성에 대한 기초적 연습을 병행한다.
- GLK 536 **자본시장법(Regulations o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정책, 입법례와 세부규정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연구한다.
- GLK 537 **금융거래판례연구(Case Studies on Banking)**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 GLK 538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surance)**
보험 관련법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 GLK 5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Legal Aspects of M&A and Banking)**
여러 종류의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K 540 **채권의발행과운용(Regulations on Bonds)**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K 541 **금융과조세(Tax Issues on Banking Law)**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세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세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절차법적 이해를 위한 연구발표 또는 강의를 포함한다 .

GLK 543 부동산금융과법(Real Estate Finance and Law)

부동산프로젝트금융, 부동산 간접투자, 해외부동산 개발 내지 투자 관련 법규 및 각종 부동산 금융 내지 투자 관련 조세법규 및 조세조약을 연구한다.

GLK 544 보험법쟁점연구(Study on Special Issues of Insurance Law)

손해보험부분과 생명, 상해보험 부분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선별하여 이에 관한 이론적, 판례적 분석을 통해 최근 보험법학의 동향을 연구한다.

GLK 545 자동차보험연구(Study on Automobile Insurance)

자동차보험표준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이론적, 판례적 분석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약관 해석법을 연구한다.

GLK 546 보험법특수문제연구(General Theory of Insurance Law)

금융법 분야의 한 축을 이루는 보험분야에서의 각종 제도, 규제, 상품약관 해석, 보험계약법 해석 중에서 선정된 이슈들을 대상으로 종합적, 심층적으로 토론한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연구도 병행한다.

GLK 547 보험법일반이론(Study of Property & Liability Insurance)

손해보험과 인보험 및 제3보험의 약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법상의 제도와 해석원리를 판례와 표준약관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익히고 이를 통해 보험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GLK 548 손해보험연구(Study of Life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동차보험이나 책임보험 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손해보험 상품을 이해하고 관련법과 약관 및 중요 판례를 분석하여 손해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GLK 549 생명상해보험연구(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총론적 이론을 공부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판례와 약관의 해석 및 외국법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한다.

GLK 550 금융회사의지배구조론(A Special Study on The Trust Act)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수문제나 주요 쟁점을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51 신탁법특수연구(The Act on Floating Charges)

신탁의 기본 원리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한 축인 신탁 관련 금융제도와 신탁법령에 관한 전반적인 쟁점 및 관련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52 동산채권담보법(The Electronic Commerce Act)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권")의 제정 이후 담보 거래의 현대화는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바, 이 수업은 위 동산채권담보법에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53 전자상거래법(A Special Study on the Financial Criminal Law)

상거래를 이루는 어음, 사채 뿐만 아니라 실물(종이)에 갈음한 전자등록에 근거한 증권 거래를 중심으로 증권전자화(내지는 무권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나 특수한 문제를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K 554 금융형법특수연구(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 영역의 관련 법령 가운데 형사제재를 수반하는 금융형법의 특수한 분야에 관하여 규범 현황, 통제메카니즘, 자본시장 체계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테마별로 연구한다.

GLK 555 자산운용업법(Law on Asset Management)

금융기관에 있어 자산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자본시장법상 집합 투자업과 자산 운용에 관한 핵심 규정들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다.

GLK 592 금융제도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 규제, 실무관행, 중개조직 및 수단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료법학과(Medical Jurisprudence)

GLB 511 의료책임법(Law of Medical Liability)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성립과 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특히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따른 민사책임법적 기본원리와 책임 성립요건의 수정보완을 모색한다. 그 밖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 발전적 해석론과 법 정책적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B 512 의료형법(Medicine and Criminal Law)

의료행위와 그의 기초가 되는 형법철학, 형법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형법상 정당화사유와 의료행위의 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상에 관한 형법적 분석, 의료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형법각칙 및 마약법 등의 특별형법상의 문제점 등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GLB 513 의료민사판례연구 I (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I)

의료과오소송에서 주의의무의 기준, 정도, 위반의 효과 등을 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진찰, 검사, 진단, 수술, 투약, 간호경과 관련 의료행위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해, 사망, 치료지연 등의 악결과의 법적문제를 다발사고 유형(산부인과, 내과, 외과, 마취과, 약화사고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설명의무, 문진, 검사상의 과실, 진료거부책임, 진료기록부위, 변조의 책임, 약화사고, 수술과오, 미용성형수술사고, 임신중절사고, 마취사고, 산과사고, 신생아 가사증후군, 총수염수술지연, 골절사임 진단 등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종합 검토한다.

GLB 514 의료민사판례연구II(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II)

의료사고에 관한 대표적인 민사판례들을 선별하여 각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과 의료현실에서 바라 본 현실적 문제점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판례의 비판적 극복을 도모한다.

GLB 515 의료형사판례연구(Crimina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에서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를 검토하며, 각 의료경과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를 연구한다. 특히 진찰, 진단, 주사, 예방접종, 마취, 수혈, 수술, 투약, 환자관리.간호 상에서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에 관한 판례를 검토한다.

GLB 516 의료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소송이 제기될 때 사전준비 절차, 입증자료 준비,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 서증, 검증, 감정, 사실조회의 법적 절차, 효과,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신문절차 등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아울러 의료과오소송에 수반되는 협동 의료 문제, 불법행위의 경합, 과실 상계 등 관련이론을 살핀다.

GLB 517 의료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과오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률관계, 의사의 검사·진찰·진단·수술상의 주의의무,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의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의료 형사 소송에서 舉證責任, 鑑定 등의 중요문제들을 연구한다.

GLB 518 의료보험법(Medical Insurance and Law)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의 확대에 수반되는 제반문제점을 연구함과 동시에 醫療救助制度로서의 의료보험의 역할 및 의료정책간의 갈등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GLB 519 의료분쟁조정제도론(Dispute Settlement System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분쟁의 유형과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검토하며 현실적인 분쟁사례와 분쟁조정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또한 각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도 함께 병행한다.

GLB 520 생명의료법학(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Law)

생명에 관련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및 존엄사와 인간의 자기결정권, 낙태에 수반된 의료 행위, 인공수정 등의 현안 문제들을 법 이론적 및 법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제화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GLB 521 의료윤리(Medical Ethics)

의사의 윤리덕목,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생명권 존중과 의사의 직업윤리, 의료행위와 법적·윤리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의 의사윤리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탐구한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국민의료상의 여러 문제들을 인접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본다.

GLB 522 의료법학특수연구(Advanced Topics in Medical Jurisprudence)

실무 및 이론영역에서 제기된 특정문제를 의료법학의 관련 과학과 상호연결 하에 검토하며 올바른 醫療法政策의 모색을 시도한다.

GLB 523 의료법정책(Legal Policy of Medical Services)

현행 의료관련법시스템과 임상의 현실 및 상호간의 조화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개정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GLB 524 비교의료법연구(Comparative Law of Medicine)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의 각종 의료법체계를 한국의 의료법체계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의료법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연구한다.

GLB 525 법의학(Forensic Medicine)

인간권리 존중의 의학인 법의학의 본질과 조사방법 등을 탐구하며, 그 개별적 영역으로 親子鑑定 및 血痕에서의 血型鑑定에 의한 개인 식별, 檢視 및 檢屍에 필요한 지식정리, 죽음의 판단 및 판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 외 인사의 검안·부검을 중심으로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치사 방법, 사용흉기 등의 규명,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기초로 하는 개인 식별연구 등을 연구한다.

GLB 526 기초의학개론(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생물학,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등 각 기초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최근 발전 경향과 중요 쟁점들을 학습한다.

GLB 527 임상의학개론(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각 임상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임상현실과 중요 쟁점들을 현장 실습위주로 학습한다.

3. 지적재산권법학과(Intellectual Property)

GLC 513 특허법.실용신안법(Patent Law.Law of Utility Models)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허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법 및 더 나아가서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해를 복돋우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나타나는 특허권자와 이용자 내지는 일반 공중의 이해 충돌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과 발명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GLC 515 상표법(Law of Trademarks)

상표 또는 서비스 표는 어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 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소비자는 상표 또는 서비스 표를 통하여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기대한다. 즉 넓게 본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 표는 기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 표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특히 상표권 또는 서비스 표 권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판단, 주지 상표의 저명성의 도용 내지는 희화, 상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GLC 516 저작권법(Copyright Law)

산업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영역에서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특히 저작물보호의 중요 요건으로서 독창성의 문제, 저작권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저작물 사용허락계약, 저작권침해에 고유한 구제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 공중에 대한 저작물의 전달자로서 실연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 저작권에 인접한 보호영역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GLC 518 지적재산권소송(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민사소송법을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 과정론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GLC 522 지적재산권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제적 발전 동향을 알아본다.

GLC 526 신지적재산권(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유전공학을 이용한 발명,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 산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제반 법규정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장래

지적재산권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C 527 국제기술도입계약(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국제적 기술도입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법 및 국제조약의 관련규정의 내용을 연구한다.

GLC 530 상표법 판례연구(Cases on Trade Marks)

상표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1 저작권법 판례연구(Cases on Copyright)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기타 법률문제를 다룬다.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 기타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저작물 또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실연인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제반문제를 분석·해결한다.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아울러 일반적인 민사상 및 형사상 법률문제도 개관하며,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성명권의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한계문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GLC 535 상품화권(Character Merchandising)

현실의 인물과 연재만화, 소설, 연극 등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을 주제로 상품화하는 행위인 소위 character merchandising에 대해서 해설한다. 현행법상 소위 상품화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강좌에서는 현실의 인물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상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공의 인물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표지보호의 문제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일부로서 보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타나는 법적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character merchandising에 대한 최근 외국판례의 동향과 이론을 소개하여 국내법상황과 비교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GLC 537 컴퓨터와 지적재산권(Computer and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 기술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법 원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우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자연력을 이용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만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형을 알아본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를 분석하여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법적 보호의 장단점 및 차이를 제시한다. 컴퓨터기술은 한편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이용을 가져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원리에 의하여 포섭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재 이의 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법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저작 인접권법 상 투자자보호의 측면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내지 업적보호의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GLC 539 특허법·실용신안법 판례연구(Cases on Patent and Utility Models)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40 디자인보호법(Industrial Design Law)

공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미적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산업 디자인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특히 특허권적 보호방법과 저작권적 보호방법의 차이 내지는 장단점,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방법 및 그 개선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산업 디자인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양 법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복돋운다.

GLC 541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흔히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매우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이 각 지적재산권의 행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권자가 그 이용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서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 경쟁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을 제한하거나 그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인지 유형화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GLC 542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

특허의 유효성, 권리범위,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및 일반법원의 소송실무상 나타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한다.

GLC 543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lict of Laws)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국제조약 및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C 544 디지털권리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권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 및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국내법, 국제조약 및 각국의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하여 연구한다.

GLC 545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Theoretical Found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연혁, 법경제학적 근거, 지적재산권제한론,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출현근거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GLC 546 프라이버시, 퍼블리시티 및 인격권의 보호(Privacy, Public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ity)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의 보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47 엔터테인먼트법(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하여 실연자 및 프로듀서의 권리, 전속계약 등 계약법상의 문제, 광고 등 상품화사업 관련 문제 등을 연구한다.

- GLC 548 부정경쟁방지법특수문제(Special Problems of Unfair Competition Law)**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표지의 희석화금지, 부정목적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금지, 상품형태의 모방금지, 영업비밀침해의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 GLC 549 미국특허법(US Patent Law)**
미국의 특허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특허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 GLC 550 미국저작권법(US Copyright Law)**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저작권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 GLC 551 유럽특허법(European Patent Law)**
유럽의 특허보호체계, 특허대상, 보호범위, 유럽특허협약, 특허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 및 규칙 등을 연구한다.
- GLC 552 유럽저작권법(European Copyright Law)**
유럽의 저작권 발전 역사, 영국과 유럽대륙의 저작권법의 차이, 주요 유럽국가의 저작권법 규정 및 판례,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 등을 연구한다.
- GLC 554 동아시아 국가의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st Asian Countries)**
매 학기별로 각 주제를 정하여 일본 및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 GLC 555 지적재산권 기본판례(Leading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국내외의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실 감각을 일깨우고, 지적재산권법의 최신 발전 동향을 살펴본다.
- GLC 55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Trade)**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국제거래에 관련된 주요 국가의 국내법규와 국제조약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적 재산의 국제거래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제시·해결한다.
- GLC 557 저작권법심화세미나(Intensive Seminar on Copyright Law)**
저작권법상 중요 쟁점사항을 심층·분석하여 연구한다.
- GLC 558 영업비밀보호법(Law of Trade Secrets)**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연구한다. 특히 특허법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 및 산업기술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 GLC 559 지적재산권 라이선싱(Intellectual Property Licencing)**
특허, 상표,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물 등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및 실무적 쟁점을 연구한다.

- GLC 560 **지적재산권 침해 및 구제(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의 내용과 이론적 배경을 국제 조약,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비교하여 연구한다.
- GLC 561 **부정경쟁행위론(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유형, 타 지적재산권법 및 일반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등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본적 내용을 연구한다.
- GLC 562 **토착유산관지적재산권(Indigenous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토착유산의 이용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각국의 입법 및 국제규범에 관하여 연구한다.
- GLC 563 **4차산업혁명과 지적재산권(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PR)**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법규범에 대한 이해와 변혁이 요구되고 있고, 법규범의 이해와 변혁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됨. 본 강좌는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되는 주요한 기술과 이에 관련되는 법적 쟁점을 주제별로 고찰하여 법과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본 강좌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공학, 나노기술, 무인운송,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활용되는 각종 기술과 IBM Watson, ROSS, Robo Adviser, 자율주행자동차.Autopilot, 드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비코인.이더리움, 핀테크 등 이들 기술이 적용되는 첨단 분야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쟁점을 분석.연구하고자 함.
- GLC 564 **인공지능과 IP(AI and IP)**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분야의 법에서 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음. 곧 인공지능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발명자의 지위 인정 여부, 교육(훈련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필요성, 데이터 활용과 정에서의 부정경쟁, 인공지능에 따른 특허요건의 판단기준 설정 등 매우 많은 법적 쟁점이 야기되고 있음. 본 강좌는 AI와 관련되는 각종 지적재산권 쟁점과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책 모색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함.

4. 경찰법학과(Police Law)

- GLF 511 **경찰행정법(Police Administrative Laws)**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적 기초를 학습한다.
- GLF 512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 지식을 학습한다.
- GLF 513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론(Theory of Offences Against Property)**
재산범죄와 경제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 GLF 514 **폭력범죄론(Crimes of Violence)**
폭력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하며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법

정책을 개발한다.

GLF 515 도로교통법(Road Traffic Laws)

도로교통의 합리적인 법 정책을 개발하고 도로 교통 법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교통법규위반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16 수사법규론(Legal Principles on Investigation)

수사의 현실과 수사절차에 관련한 법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적 원칙을 유지시키는 수사절차법의 형성을 모색한다.

GLF 517 형사증거법(Criminal Evidence)

증거법의 일반원리를 학습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의 직무규범을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GLF 518 형법정보학(Criminal Informatics)

각종 형사법규범과 판례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경찰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의 법 지식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법정보학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개발한다.

GLF 519 경찰관직무집행법(Code of Practics by Police Officers)

경찰관직무집행의 일반원칙을 연구하고, 불심검문과 보호조치의 이론과 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를 연구 한다.

GLF 520 경찰행정작용연구(Study on Policing)

각종 경찰행정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탐구 한다.

GLF 521 경찰조직법연구(Study on Police System)

경찰조직의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제 및 경찰공무원법체계를 연구하고 민주적 경찰의 합리적 모델을 모색한다.

GLF 522 경찰법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Police Laws)

경찰 직무에 관련한 시사적인 법적 문제를 선별하여 경찰행정법 또는 형사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비판적으로 연구.분석한다.

GLF 523 경찰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Police Law)

경찰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한다.

GLF 524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Remedies against Police Acts)

경찰작용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당해 경찰작용의 시정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GLF 525 비교경찰법론(Comparative Study on Police Law)

선진 외국의 법제와 해석론을 비교 연구하여 그 장점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경찰법의 발전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F 526 환경범죄론(Theory of Environmental Crimes)

환경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27 경찰정보관리론(Theory of Information Management)

경찰의 정보수집.관리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정보관리활동의 한계를 규명한다.

GLF 528 경찰책임론(Theory of Police Liability)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의 문제를 경찰책임의 본질, 종류, 고 권력주체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인과관계,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5. 공정거래법학과(Department of Antitrust and Consumer Protection Law)

GLH 511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한 법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GLH 517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부정경쟁방지법상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각 유형 및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선진외국법상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되고 있는 예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H 518 약관규제법(Adhesion Contract Law)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약관규제법을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한다.

GLH 5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Protection of Consumers on Electronic Commerce Law)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연구한다.

GLH 522 공정거래법 판례·심결례연구(Cases on Antitrust Law)

경공정거래법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를 유형별로 심층 연구한다.

GLH 526 경제법 특수문제연구(Selected Problems in Trade Regulation Law)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법,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등 경제법 관련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H 531 독과점규제론(Study on Monopoly Regulation)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2 불공정거래규제론(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공정거래법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3 미국독점금지법(U.S. Antitrust Law)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독점금지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GLH 535 기업결합규제론(Study on Merger Control)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등을 연구한다.

GLH 536 부당공동행위규제론(Study on Cartel Prohibition)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9 하도급거래법(Subcontract Transactions Law)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 GLH 540 프랜차이즈와공정거래(Franchise Transactions and Fair Trade)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지)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 GLH 541 표시·광고와 공정거래(Representation & Advertisement and Fair Trade)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 GLH 542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air Trade)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 GLH 545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 GLH 546 비교경쟁법(Comparative Competition Law)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외국 경쟁법과 한국 경쟁법간, 또는 외국 경쟁법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경쟁법의 세계적 흐름을 파악한다.
- GLH 547 방송통신법(Communication Laws)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의사소통매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연구하고 산업과 연관된 배경과 이론을 국내외 판례 등과 함께 탐구한다.
- GLH 548 회사및기업집단지배구조론(Corporate Governance over a Firm and Business Groups)
회사 및 기업집단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을 연구한다.
- GLH 549 법경제학과경쟁법(Law and Economics with Emphasis on Antitrust)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특히 경쟁법에 중점을 두어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법규범 일반과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발전방향 연구를 추구한다.
- GLH 550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거래(Antitrust on the On-line Platforms)
온라인 상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검색, 전자상거래, SNS, 게임, 배달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산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규제도 새로운 유형과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 과목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새로운 규제제도와 향후 방향을 연구함
- GLH 551 공정거래형법(CRIMINAL COMPETITION LAW)
최근 형사적 집행이 급증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는 공정거래형법 분야는 학술연구 및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 이 과목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학문적, 실무적 배경, 비교법적 연구, 집행절차, 실제적 법해석론, 형사정책, 행정적 집행과의 조화 등을 연구함

6. 민사절차법학과(Department of Civil Procedure Law)

- GLI 511 민사소송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민사절차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한다.
- GLI 512 민사집행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Execution)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집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GLI 513 민사소송법 구조론(Structur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심리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전체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GLI 514 소와 재판론(Claims and Judgements)

소의 제기, 소송물론, 판결의 효력, 불복제도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GLI 515 민사증거법(Civil Evidence Law)

각종의 증거조사절차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GLI 516 다수당사자소송론(Multi-Party Litigation)

공동소송, 참가소송, 집단소송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절차를 연구한다.

GLI 517 인터넷소송법(Law of Internet Civil Procedure)

인터넷상의 전자거래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연구한다.

GLI 518 손해배상소송법(Law of Tort Liability Litigation)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산정 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수문제를 연구.검토한다.

GLI 519 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s o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판례를 연구.검토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꾀한다.

GLI 520 국제민사소송법(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국제민사사법공조, 국제도산법 등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1 비교민사소송법(Comparative Civil Procedure)

외국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의 의미, 유래 등을 이해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GLI 522 회사관계소송법(Corporate Litigation)

주식회사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기본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3 부동산집행법(Law of Immovable Property Execution)

부동산경매절차 등 부동산집행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4 보전소송법(Prejudgement Remedies)

가압류.가처분절차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5 민사집행법 판례연구(Cases on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연구한다.

GLI 526 보전소송법 판례연구(Cases on Prejudgement Remedies)

가압류.가처분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연구한다.

GLI 527 도산법 I (Bankruptcy I)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8 도산법 II(Bankruptcy II)

회사회생절차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9 도산법판례연구(Cases on Bankruptcy Law)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에 관한 판례를 연구한다.

GLI 530 중재법(Arbitration Law)

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중재법상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31 ADR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 외 분쟁처리절차의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32 동산·채권집행법(Law of Movable Property and Obligation Execution)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33 채권집행실무(Practice of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Claims)

채권집행에 관하여 보전소송에서부터 압류, 금전화절차를 거쳐 배당에 이르기까지 민사집행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함. 관련 대법원 판례를 심도 깊게 이해하여 실무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GLI 534 보전소송실무(Practice of Injunctive preservation)

보전소송의 요건별로 실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용되는지 강의함
대법원 판례의 체계적 이해를 통하여 실무상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함

GLI 535 판결서주문의이해(Orders of Judicial Decisions)

민사, 가사, 집행, 항소심 등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판결서 주문의 원리를 이해함. 이를 통하여 실제 사안에서 판결서 주문을 도출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함

7. 조세법학과(Department of Tax Law)

GLL 511 세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ax Law)

조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개념과 법원칙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하여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의 일반원리를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연계하여 분석한다.

GLL 512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on Tax Law)

조세분야의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기존의 법적용과 해석을 평가하고 그 이론적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GLL 513 법인세법(Law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합병·분할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조세문제를 포함한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법인세본질논의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GLL 514 소득세법(Law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소득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소득유형별로 심층분석하고 이론과 실무 양면에 걸친 법적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득과세의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GLL 515 소비세법(Law of Consumption Taxation)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중심으로 소비세제의 현대적 특징을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비교·연구한다.

GLL 516 상속증여세법(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문제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의 평가문제와 연계한 실무적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연구한다.

GLL 517 세무회계론(Theory of Tax Accounting)

회계학적 기초와 세법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및 보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세무회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무상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GLL 518 법률가와회계(Lawyer and Accounting)

세무회계와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회계학적 지식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새롭게 체계화하고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한다.

GLL 519 조세특례론(Theory of Tax Privilege)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0 조세절차법(Law of Tax Administrative Procedure)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징수절차에 관한 일반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과세처분 등 조세행정절차에 특유한 이론적 문제를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21 세무조사론(Theory of Tax Investigation)

과세자료의 수집·분석과 처리 및 비밀준수와 정보공개에 걸친 이론적 문제들을 실무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2 조세쟁송법(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국세심판 등 소송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3 조세제재법(Law of Tax Fraud and Crimes)

조세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이론화하고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GLL 524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Tax Theories and Tax Philosophers)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사상을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L 525 기업조세법(Law of Business Taxation)

개인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GLL 526 부동산세제론(Theory of Real Estate Taxation)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관련하는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부동산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장래에

향한 바람직한 세제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7 원천세제론(Theory of Source Taxation)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반 조세실체법적 및 조세절차법적 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연구한다.

GLL 528 유럽세법(European Tax Law)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L 529 미국세법(American Tax Law)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30 이전가격세제론(Theory of Transfer Price Taxation)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를 이전가격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OECD모델조세협약 등 국제규범과 국제조세조정예관법률에 기초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역할과 노력이 반영된 새로운 이론과 제도를 연구한다.

GLL 531 관세법(Customs Law)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한다.

GLL 532 중국세법(Chinese Tax Law)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세법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중국세제의 특징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요 세목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관련 학설과 판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중국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GLL 533 지방세법(Local Tax Law)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하는 세목에 관한 체계적 이론과 제기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GLL 534 국제거래와조세(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axation)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개별세법을 중심으로 국경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 조세조약남용 등 다양한 조세문제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한다.

GLL 535 금융세제론(Tax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자본시장법이 자리잡으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수집 및 처리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제를 주요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L 536 조세헌법론(Theory of Tax Related Constitutional Law)

조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37 조세헌법판례연구(Constitutional Cases on Tax Law)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세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법의 해석과 헌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GLL 542 조세회피방지론(Theory of Anti- Tax Avoidance)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OECD를 비롯한 각국의 입법적 대응방안을 주요국의 입법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국내의 학설 및 판례 이론과 비교하여 관련 조세법 이론 및 실무의 핵심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함

GLL 543 조세입법정책론(Tax Legislation Policy)

조세입법정책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 수업함. 기존 조세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사항과 최근 도입되거나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조세입법의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집중하여 수업함.

8. 국제법무학과(International Business Transation and Trade Law)

GLM 511 국제거래법일반이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이 강좌는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제거래법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상법등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 용역, 기술투자, 금융, 신용장, 어음·수표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GLM 512 국제상품무역법(Law of GATT)

WTO의 전통적 중심 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연구한다.

GLM 513 국제물품매매법(International Sale of Goods)

좁은 의미의 국제거래법에 해당되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다루면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불이행에 대한 구제 등을 검토한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C.C. 제2장(매매) 및 I.C.C.의 INCOTERMS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4 신용장법론(Letter of Credit)

국제거래상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그 구조 및 대금결제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데, 특히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관련법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6 국제상사중재법론(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상사중재와 관련한 법원칙 및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연구한다.

GLM 517 국제투자거래법론(International Investment Transacions)

외국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 외국의 부동산 취득, 외국회사 자체의 직접 매입 등과 같은 국제투자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제투자에 관한 각종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이 강좌는 북미대륙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 등의 국제투자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GLM 518 국제조세법론(International taxation)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outbound transactions)와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inbound transactions)에 관한 각종 조세문제를 연구한다. 이 강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중조세(double taxation)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GLM 520 국제금융거래법론 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학습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나타나는 국제금융거래법상의 쟁점들을 추가한다.

GLM 521 국제금융거래법론 II(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II)

이 강좌에서는 국제금융거래에서 핫이슈화하고 있는 외환거래의 제반 문제점과 스왑,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의 제반 문제들을 학습한다. 또한 오늘날 사회 간접시설 등은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기법의 하나로 굳게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오늘날 국제거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초이론 및 각종 사례연구도 시도한다.

GLM 522 국제보험법론(International Insurance)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제반 위험의 부분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인 해상보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이 개척되어 가는 위험인수분야가 추가된다.

GLM 523 전자상거래법론(E-Commerce)

이 강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화되는 국제거래의 제반 문제점을 학습한다.(e-U.C.P., & e-Bill of Lading, etc.).

GLM 524 국제물류법론(International Logistics)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해상물류 이외에도 육상물류, 항공물류 등 운송공간(동적 물류) 및 창고공간(정적 물류) 등을 광범하게 망라한다.

GLM 525 국제거래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이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시사적으로 특히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탄력성 있게 설강한다.

GLM 526 국제거래판례연구(Case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기본 판례를 소개하고, 평석한다.

GLM 527 국제계약법일반이론(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금융계약 기타 국제계약은 오늘날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과 문례를 학습하고 문언처리상의 주의 점을 각종 판례 및 기초법리와 견주어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서를 지배하는 영미 계약법의 기초 원리를 해당 계약조항의 문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GLM 528 국제지식재산거래법론(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국제지식재산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및 관련 국제규범 등을 함께 연구한다. 이와 함께 특허권·상호권·저작권 등의 보호문제와 국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다룬다.

GLM 529 국제운송법론 I(International Transactions I)

국제해상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GLM 530 국제운송법론 II(International Transactions II)

국제항공운송계약, 국제육상운송계약 및 국제복합운송계약 등 다양한 국제운송계약을 연구하며 특히 이들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GLM 531 국제사법론(Private International Law)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될 준거법의 지정 및 재판관할권의 확정 등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법률관계의 성질, 연결점 및 반정 등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을 다룬다. 또한 국제민법, 국제물권법, 국제채권법 및 국제친족법 등 국제사법의 각론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룬다.

GLM 532 다국적기업법론(Multinational Corporations)

이 강좌는 글로벌시대에 다국적기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나 개념적인 쟁점들을 검토하고 연구한다.

GLM 533 영미회사법(The Anglo-American Corporate Law(Lectured In English))

이 강좌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영미 회사법이 이들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충실의무, 내부자거래, 주주소송 및 기업조직변경 등 다양한 기업경영 관련 주제를 다룬다.

GLM 534 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경제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국제법 주제, 국제법의 연원,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GLM 535 국제서비스무역법(Law of GATS)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연구한다.

GLM 536 국제투자법(La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국제경제법의 전통적 분야이면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국제 투자문제의 법적문제를 연구한다.

GLM 537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International Regulation of E-commerce)

전자상거래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예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관련 국제경제법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GLM 538 국제경쟁법(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조세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조세학설과의 비교를 통해 세법이론을 발전시키고 세법의 해석과 헌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다.

GLM 539 무역구제법(International Trade Remedies and the WTO)

상품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상계조치와 세이프가드조치를 WTO협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GLM 540 국제무역과환경(Environment & International Trade Law)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연구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국내규제와 국제

통상법의 관계를 공부한다.

GLM 54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the WTO)

WTO 다자무역체제에서 인정되는 지역무역협정의 법적 요건과 다자무역체제와의 관계 및 주요 지역무역협정을 연구한다.

GLM 542 국제관세법과원산지규정(International Customs Law & Rules of Origin)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WTO협정,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주요 FTA 규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을 연구한다.

GLM 543 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the WTO)

WTO의 새로운 중심 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GLM 544 WTO분쟁해결제도(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국제통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WTO분쟁해결제도를 DSU 규정 및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M 547 EU통상법연구(EU Trade Law)

EU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공동체법과 EU가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M 548 국제통상협상(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

통상관련 조약의 체결과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통상외교

GLM 549 국방계약론 (General Issues on Defence Contract)

정부간국외구매계약(FMS)과 국외상업구매계약(DCS)의 기본 사항을 다루며, 이와 관련한 특수계약 조건의 세부 내용을 익힘

GLM 550 방위사업정책론(The Theory and Practice of Defence Acquisition Programme)

주요국의 방산정책과 방산업계의 시장 형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의 국방 중장기 기획 및 관리 방안에 따른 전력 소요 기획 및 획득, 및 관련 예산정책을 익힘

GLM 551 국제안보법정책론(The International Law and Policy on National Security)

한국 주변 주요 국가들이 국제법을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의 대외지향적 발전구조에 부합하는 국제법정책의 방향을 모색함

IV. 법무대학원 규정

1. 대학원 학칙

대 학 원 학 칙

1953. 10. 20 제정	1955. 5. 13 일부개정
1956. 12. 29 일부개정	1957. 4. 1 일부개정
1959. 4. 1 일부개정	1960. 8. 8 일부개정
1963. 9. 1 일부개정	1966. 9. 1 일부개정
1967. 3. 1 일부개정	1969. 3. 1 일부개정
1972. 3. 1 일부개정	1973. 3. 1 일부개정
1974. 3. 1 일부개정	1976. 8. 20 일부개정
1977. 3. 1 일부개정	1978. 3. 1 일부개정
1979. 3. 1 일부개정	1980. 3. 1 일부개정
1981. 3. 1 일부개정	1982. 9. 1 일부개정
1984. 3. 1 일부개정	1988. 3. 1 일부개정
1989. 3. 1 일부개정	1991. 3. 1 일부개정
1992. 3. 1 일부개정	1993. 3. 1 일부개정
1994. 3. 1 일부개정	1995. 3. 1 일부개정
1995. 4. 25 일부개정	1996. 3. 1 일부개정
1998. 3. 1 일부개정	1999. 9. 1 일부개정
2000. 5. 25 일부개정	2004. 3. 1 전부개정
2008. 3. 1 일부개정	2008. 8. 18 일부개정
2009. 1. 12 일부개정	2009. 9. 22 일부개정
2009. 11. 27 일부개정	2010. 6. 4 일부개정
2010. 11. 2 일부개정	2010. 12. 6 일부개정
2011. 5. 17 일부개정	2011. 7. 14 일부개정
2012. 1. 17 일부개정	2012. 6. 4 일부개정
2012. 3. 20 일부개정	2012. 8. 21 일부개정
2012. 11. 7 일부개정	2013. 6. 26 일부개정
2013. 12. 30 일부개정	2015. 1. 1 전부개정
2016. 9. 1 일부개정	2017. 3. 1 일부개정
2019. 9. 1 일부개정	2020. 6. 1 일부개정
2021. 9. 1 일부개정	2022. 6. 1 일부개정

<대학원행정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고려대학교 학칙」 제3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된 대학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율체계) ① 이 학칙은 본교에 설치된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제외, 이하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외의 모든 대학원을 통칭한다)에 공통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다.

② 대학원에 공통되는 사항 중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 대학원에 특유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이하 '대학원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준용) 이 학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2장 학적관리

제1절 학적의 발생

제1관 입학

제4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②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③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④ 학·석사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4조제1항의 학사과정 입학자격에 따른다. <신설 2022. 6. 1.>

제5조(입학정원) ① 입학정원은 엄정하게 관리한다.

- ②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학문수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원의 입학)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원의외로 입학할 수 있다.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4.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의외 입학이 허용된 사람

제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입시요강에 의한다.

제8조(지원절차) 입학하려는 사람은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한다.

제2관 편입학, 재입학

제9조(편입학)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10조(재입학) ① 총장은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사람
2.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사람
3. 그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

-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제2절 학적의 변경과 소멸

제11조(휴학)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

제12조(휴학기간) 휴학기간은 대학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복학)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제14조(자퇴)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

제15조(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4. 재학연한이 경과한 학생
5. 그 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학생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학과·전공 등

제16조(학위과정) ① 모든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석·박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1. 9. 1.>

⑤ 일반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학·석사통합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 6. 1.>

제16조의2(연계과정)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학사학위 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이 상호 연계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제17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생은 석사학위 과정 입학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학과·전공)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문 분류상의 독립성, 학문수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19조(학과·전공의 변경) 입학 이후에 학과·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협동과정과 계약학과) ①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② 대학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총장은 협동과정과 계약학과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융합전공) 대학원에는 융·복합적 인재양성을 위해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제2절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21조(수업연한 일반) 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2년 이상
 2. 박사과정: 2년 이상
 3. 삭제 <2021. 9. 1.>
 4.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5. 학·석사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신설 2022. 6. 1.>
- ②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업연한은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연한의 단축) ①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1년 이내
 2. 박사과정: 6개월 이내
 3. 석·박사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개정 2021. 9. 1.>
 4. 학·석사통합과정: 2년 이내 <개정 2022. 6. 1.>
- ② 수업연한의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재학연한)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과정, 학점취득, 학점인정

제24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제25조(학기별 학점취득) ① 학기별 학점취득의 상한은 각 대학원별로 정한다.

② 계절수업의 학점취득은 6학점 이내로 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수한 본교 대학원 선수강 학점은 각 대학원의 과정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각 대학원에서 지정한 학·석사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수료와 학위취득

제27조(수료의 방법과 요건) ① 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취득에 의한 수료
 2. 그 밖에 국가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칙이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수료
-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한 학위과정 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8조(학위취득)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 또는 그밖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학생에게 학위과정에 따라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제29조(수료연구생) ① ‘수료연구생’이란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
- ② 수료연구생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지도교수, 학위청구, 학위수여

- 제30조(지도교수 및 위원회) ① 학생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수업 및 연구의 지도를 받는다.
- ②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
- ③ 지도교수와 관련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

제31조(학위구분) 본교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
2. 박사학위
3. 명예박사학위

- 제32조(학위청구의 자격과 연한) ① 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학위청구의 자격,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의 명칭) 각 대학원별 학위취득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명칭은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34조(공동 또는 복수학위 수여) ①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공동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공동 또는 복수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또는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5조(명예박사) ① 문화, 예술, 학술 등의 분야에서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박사학위 종별에 따른다.
- ③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2. 일반대학원장의 제청

- 제36조(학위취소) 본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학위를 취소한다.
1. 각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개정 2021. 9. 1.>
 2. 각 대학원장의 제청 <개정 2021. 9. 1.>

제4장 학생활동

제37조(학생자치활동과 그 지원)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단체를 둔다.

② 본교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2조가 정하는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38조(학생의 일반의무) 학생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하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학칙의 개정

제41조(절차의 원칙) 이 학칙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안의 작성과 공고: 대학원장이 각 부서의 개정의견을 수합하여 작성한 학칙 개정안을 교내 신문,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고함
2. 의견 접수와 심의안 작성: 대학원장이 공고기간 중에 접수한 의견을 검토하여 심의안을 작성함
3. 교무위원회의 심의
4.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5.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의 승인
6. 확정·공포: 총장이 학칙 개정안을 확정·공포함
7. 시행

제42조(절차의 생략) 상위규범 개정사항의 반영, 단순한 자구 수정,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과 같이 기술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은 제41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6조 제4항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장, 제41조, 제42조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17조, 제22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의2 신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개설된 융합전공은 이 개정학칙 제20조의2(융합전공)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의2 신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4조, 제22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 내지 제3항, 제36조 개정 및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제3호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개설된 학·석사통합과정은 이 개정 학칙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IV. 법무대학원 규정

2. 대학원학칙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대학원학칙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2004. 3. 1. 제정
2008. 3. 1. 일부 개정
2009. 3. 1. 일부 개정
2013. 3. 1. 일부 개정
2015. 3. 1. 전부 개정
2016. 8. 9. 일부 개정
2017. 9. 1. 일부 개정
2017.12. 1. 일부 개정
2018. 9. 1. 일부 개정
2020. 3. 1. 전부 개정
2020. 9. 1. 일부 개정
2021. 3. 1. 일부 개정
2021. 9. 1. 일부 개정
2022. 9. 1. 일부 개정
<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본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 법무대학원(아래에서는 “대학원”이라 함)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이 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계속교육을 목적으로 법학적 사고 능력을 심화시키고 지도자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에 기여할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제3조(내규, 지침 등) 이 시행세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내규,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기구

제4조(원장) ① 대학원에 원장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며,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부원장과 주임교수) ① 대학원에 부원장을 두며, 부원장은 대학원장을 보좌하고 대학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

제6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교육·연구·행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과 각 학과의 주임교수로 구성한다.
- 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설치, 폐지, 통폐합, 학생정원 및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내규,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학적관리

제7조(입학자격) ① 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
- ②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제1항과 같다.

제8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시요강으로 정한다.
- ③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정한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입학) ① 재입학과 재입학시의 학점인정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 제10조와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②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동일한 학과로 한다. 다만, 폐지·통폐합 등으로 해당 학과가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학과 또는 신설된 통합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학위취득 연한) ① 학생은 입학 이후 7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제1항이 정하는 학위취득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2. 임신 또는 출산
 3. 그밖에 대학원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제11조(학위취득 연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례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청구논문문을 제출 또는 교과트랙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1. 군복무
 2. 임신 또는 출산
 3. 국외 또는 지방 장기근무
 4. 공직연수
 5. 그밖에 대학원위원회가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② 특례인정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서식3]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과트랙 이수 신청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특례대상자의 종전 종합시험 합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 ④ 특례인정은 1회에 한하며, 특례인정을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두 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 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며,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특례인정을 신청하여 허가된 학생은 논문트랙 및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교과트랙의 신청 및 절차는 법무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수료수강생) ① 학위취득 연한(7년)이 경과하지 않은 일반수료생이 학위취득을 위하여 등록 후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위취득 연한이 경과하여 특례인정을 허가 받은 후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점취득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수료수강생'이라 한다.

② 수료수강생에 관한 사항은 법무대학원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른다.

제13조(휴학 및 휴학의 제한) ① 휴학에 관해서는 「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각각 준용한다.

② 국가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연수원 교육 등으로 인하여 이 시행세칙이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휴학해야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위취득 연한의 범위 내에서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21.9.1.>

제14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석사학위과정: 통산 5학기

2. 연구과정: 통산 4학기

② 군복무, 임신·출산, 육아,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1.>

③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자녀당 각각 최장 1년, 기관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최장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1.>

④ 재입학자의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후에 휴학한 기간을 통산한다.

⑤ 휴학기간은 학위취득 연한에 산입한다.

제4장 학사운영

제1절 학위과정 및 학과

제15조(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에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

②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16조(학과)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 | | |
|-------------|------------|
| 1. 금융법학과 | 2. 의료법학과 |
| 3. 지적재산권법학과 | 4. 경찰법학과 |
| 5. 공정거래법학과 | 6. 민사절차법학과 |
| 7. 조세법학과 | 8. 국제법무학과 |

② 제1항의 학과 외에 계약학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학과의 변경) ① 입학 이후에 학과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첫 번째 학기 수료 직후에 한하여 학과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과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두 번째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과변경 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의 승낙서(신·구)
3. 성적증명서

제2절 교육 및 학점취득

제18조(교육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과과정 일람을 따른다.

제19조(수업 방법)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하며, 현장실습 등 국가법령 및 학교규칙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교수) 석사학위 과정 학생은 두 번째 학기 초에 지도교수 지정을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는다.

제21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이 1년을 초과하여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2. 학과 주임교수 및 신·구 지도교수의 승인서

제22조(학기별 취득학점) 학생은 한 학기에 교과학점을 최대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23조(수강신청 및 정정)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대학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두 번째 학기부터 매 학기 연구지도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연구지도 학점은 이 시행세칙 제22조가 정하는 학기별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다른 대학원과 공동 개설한 교과목의 수강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강신청 정정은 소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내역을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제24조(학점인정)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학위 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군 위탁생이 군내 교육기관(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육군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군 위탁생의 근무지가 변경된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후 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과를 변경한 학생은 전공학과 변경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 중 새로운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목의 학점만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재학기간 중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의 필요에 따라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국내외의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제25조(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별표 1>과 같다.

제3절 종합시험 및 종합시험 대체제도

제26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학기 이상 이수
2. 12학점 이상 취득
3. 평점평균 3.0이상

제27조(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종합시험의 과목) 종합시험은 학과 주임교수가 선정하는 전공 2과목으로 한다.

제29조(종합시험의 합격 기준)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30조(종합시험 재응시)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를 할 수 있다.

제31조(종합시험 대체제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인정학술지(예: SSCI·A&HCI·SCOPUS 등재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등)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1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또는 「The Asian Business Lawyer」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1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의 학술지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단독저자 또는 주저자로 학술논문 2편(인정환산율 100%)을 게재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인정환산율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종합시험을 구술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합시험 신청기간에 구술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술시험은 제1항의 논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되, 구술시험 신청 전에 해당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절 학위취득의 조건 및 종류

제32조(학위취득을 위한 전제요건)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5학기 이상 등록

② 수료 요구 학점

1. 논문트랙은 총 28학점 이상 취득(연구지도 4학점 포함) <개정 2022. 9. 1.>

2. 교과트랙은 총 32학점 이상 취득(연구지도 2학점 포함) <개정 2022. 9. 1.>

③ 평점평균 3.0 이상

④ 종합시험 합격 또는 종합시험 대체제도 통과

⑤ “인권과 성평등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

제33조(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의 종류) 학생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논문트랙: 학위논문 통과에 의한 학위취득

2. 교과트랙: 수료 최소 이수학점<별표1>의 교과트랙에 해당하는 학점취득에 의한 학위취득

제34조(트랙의 신청 시기 및 절차) ① 학생은 네 번째 학기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② 학위취득을 위한 트랙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9. 1.>

1. 논문트랙: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다. <개정 2022. 9. 1.>

2. 교과트랙: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신청한다. <개정 2022. 9. 1.>

제35조(학위청구 트랙의 변경) ① 신청한 학위청구 트랙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 트랙변경에 관한 절차 및 시기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9. 1.>

제5절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심사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를 제출한다.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심사용 논문(가제본) 3부
2.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3.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4.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명단
5.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6.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

②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전기는 4월말, 후기는 10월말까지로 한다.

제38조(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학생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학위청구논문 작성 언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가 승인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논문심사 및 학위수여 심의

제40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41조(심사방법)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평가하며, 그 방식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불합격으로 하며, 합격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학위수여 심의)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의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공개강좌와 연구생

제43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서[별지서식1]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연구과정) ① 대학원이 개설하는 특정 교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대학원이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연구과정의 교과는 법무대학원 교육과정 일람을 따른다.

④ 연구과정 이수자에게는 [별지서식 2]의 증서를 교부한다.

제45조(연구과정 기관위탁생) ① 연구과정 기관위탁생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가, 그밖에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탁생으로서 연구생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구술시험 및 면접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위탁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위탁교육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대학원장이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수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④ 위탁생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장학금, 상벌, 학생활동

제46조(장학금) ①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로 정한다.

제47조(포상과 징계)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학교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학생회) ① 대학원에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49조(준용) 이 시행세칙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학사운영 규정」,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별표1> 수료 최소 이수학점(제25조 관련) <개정 2022. 9. 1.>

구분	석사과정 논문트랙(학점)	석사과정 교과트랙(학점)	연구과정(학점)	비고
진공선택	12	16	6	
일반선택	12	14	6	
연구지도	4	2(4)	해당없음	교과트랙은 2학점만 졸업학점 인정
계	28	32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은 시행일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 시행세칙 시행일 기준 수료생도 교과트랙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2.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의 제11조제1항은 교과트랙 제도의 신설일자인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3항 신설, 제14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별표 1> 개정)
2. (적용례) 제25조, 제32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1]

제 호

이 수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교육과정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법무대학원이 개설한 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 장 ○ ○ ○ (직인)

[별지서식2]

제 호

증서

성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법무대학원 ○○○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 ○ ○ (직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고려대학교 총장 ○ ○ ○ (직인)

